

#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86
----------	-------

발의연월일 : 2019. 7. 26.

발의자 : 임이자 · 박명재 · 문진국

추경호 · 최교일 · 김수민

강효상 · 송희경 · 송언석

원유철 · 한정애 의원

(11인)

### 제안이유

지난 2018년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바 있음. 하지만 방치·불법투기·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부재는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 및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 인상은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여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임.

이에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현행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정망 확보 및 님비극복 등을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

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하며,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을 말하고,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말함(안 제2조).
- 나.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5조).
- 라.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안 제9조).
- 바.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야 함(안 제10조).

사.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14조).

자.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차.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안 제18조).

카.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안 제30조).

타.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 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

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안 제32조).

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부지가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구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한 주민은 운영이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안 제33조).

거.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안 제34조).

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이익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함(안 제35조).

더.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안 제36조).

라.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안 제39조).

마.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 고용할 수 있음(안 제40조).

##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을 말한다.
3.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장관 등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주민특별기금”이란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환경부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금액을 말한다.

8. “주민투자금”이란 제33조제1항에 따라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이 개별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의 확충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 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향
2.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기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하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

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방치폐기물
2. 부적정처리폐기물
3. 재난폐기물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제1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공고) 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후보지 선정방법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주체

②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⑥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결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자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과정과 그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입지선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인접 시·도 또는 시·군·구와의 협의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

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지가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

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국고 및 주민특별기금, 주민투자금, 설치·운영기관의 출연금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 이외 설치·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신속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른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승인)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과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수립을 함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입지결정·고시 및 설치계획 승인·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지결정·고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공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

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위탁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17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  
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설치·운영기관 직

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설치·운영기관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여세, 소득세, 범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국가재정법」의 적용 특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30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

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31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금수혜지역: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제1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⑤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⑥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5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기관에 그 토지·

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⑦ 설치·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제3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

의

3. 제37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특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나 설치·운영기관의 출연금으로 조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설치·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⑤ 설치·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주민의 전·출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부지가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구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운영기관으로부터 제3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운영기관은 제20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내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원
  2. 제33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내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원
  3. 국고 투입에 따른 국가 환수금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원금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위한 유보금 적립
  6. 그 밖에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원받는 경

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사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

제3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이외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의 관리실태

3. 제3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⑤ 설치·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4항의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설치·운영기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 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주민복지지원 등) ①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중 희망자에 한정하여 주민건강검진 지원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부지에 설치 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사용 지원

2.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영이익금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환경부장관은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확보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42조(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칙

제43조(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혜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